

의안번호	제609호
의결 연월일	2024년 6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6월 10일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9
----------	-----

제안연월일 : 2024년 6월 10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1회로 제한(안 제7조 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제출의견 없음”

- '24. 6. 4.(화) ~ 6. 9.(일) /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관 계 법 령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안(행정안전부, '19. 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 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